

학교법인 레마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일 시 : 2022년 6월 28일(화) 16:00 ~ 16:3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6월 17일(금)]

2. 장 소 : 화상회의(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회의 : 증빙자료 별첨)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6인) : 윤원영(이사장), 노만균, 박종환, 송 민, 이영희, 조장환 이사
- 감사(2인) : 김명원, 조영임 감사

○ 불참 임원

- 이사(2인) : 이미순, 임성빈 이사
- 감사(0인) : 없음

※ 배석자 : 정영준 법인사무국장, 방진희 총무팀장, 금지환 교학팀장

4. 안 건(심의)

- 가. 제1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 나. 제2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신규채용(안)
- 다. 제3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재임용(안)
- 라. 제4호 :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간서명	송 민	이영희	조장환
-----	-----	-----	-----

5. 회의 내용

□ 개회 선언, 기도 및 전차 회의록 접수

- 이사장(의장) : 재적이사 8인 중 6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기도한 후, 법인사무국장의 2022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대하여는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하다.
안전 심의는 제1호 안전부터 제4호 안전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알리다.

□ 안전 심의

(제1호 안전)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 이사장(의장) : 제1호 안전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전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다.
- 사무국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안전에 대하여,
 - (1) 변경 사유
 - 2022학년도 제1차 이사회(2022.04.28.) 때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변경 정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였기에 이를 정관에 반영하기 위함
 -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 보고 회신(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4925 ; 2022.05.25.)
 - (2) 주요 변경 내용
 - 일반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신설된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을 준용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며, 일반직원과 교원에게 적용하는 징계관련 사항을 구분함(제71조)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 및 해임 요구 등 조항을 정관에 반영함(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1조의4 신설)
 -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인 법인의 임직원과 학교의 교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하되, 이 중 주요 사항과 위반 시 임용권자의 제재 조치 등을 정관에 명시함(제78조의4)
 - (3) 신규 조문 대비표(별도 붙임 자료)
 - ~ 등의 학교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에 따라 변경 사유와 주요 변경 내용, 신규 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전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간서명	송민	송민	이영희	이영희	조장환	조장환
-----	----	----	-----	-----	-----	-----

- 조장환 이사 : 지난 4월에 제1차 이사회 때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정관 변경 보고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일부 시정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송 민 이사 : 조장환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노만균 이사 : 송 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신규채용(안)

- 이사장(의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신규채용(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다.
- 사무국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신규채용(안)에 대하여,

(1) 제안 이유

- 2022.02.28.자 퇴직 전임교원(1명)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청한 신규 채용 교원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함

(2) 교원 신규채용 제청 내용(총 1명)

- 전 공 : 리더십학
- 성 명 : 곽충목(남, 1969.08.13.생)
- 임용직급 : 조교수(비정년트랙)
- 임용일자 : 2022.09.01.자
- 임용기간 : 2022.09.01. ~ 2024.08.31.(2년)

(3) 2022학년도 제2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2022.06.21.)

- 교원 신규채용 후보자(리더십학 전공 곽충목)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연구 실적물 등을 확인한 결과 조교수 채용 대상으로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동 평가를 승인하며 채용의 적격함을 확인하고 전체 위원 찬성으로 의결함
- 신규채용 대상자 종합평가 결과

지원분야	성 명	학력 및 경력 평가(40)	연구실적 심사(40)	면접심사(20)	계(100)
리더십학	곽충목	34.7	32.0	17.7	84.4

~ 등에 대하여 회의 자료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다.

간서명	송 민	송민	이영희	이영희	조장환	조장환
-----	-----	----	-----	-----	-----	-----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노만균 이사 : 지난 2월 말에 퇴직한 전임교원 1명의 후임을 보충하기 위해 신규채용하는 것이며, 학교에서 정해진 채용 절차를 거쳐 조교수 임용 대상으로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제청하였으므로, 학교에서 임용 제청한 교원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조장환 이사 : 노만균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이영희 이사 : 조장환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2022.09.01.자 교원 신규채용(안)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2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신규채용(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재임용(안)

- 이사장(의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재임용(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다.
- 사무국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재임용(안)에 대하여,
 - (1) 제안 이유
 - 정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제청한 아래 교원의 2022.09.01.자 재임용(안)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확정하고자 함
 - (2) 교원 재임용 제청 내용 (총 2명)
 - (가) 리더십학/정신분석상담학 전공 교수 강웅섭(1968.06.17.생)
 - 재임용직급 : 교수(비정년트랙)
 - 재임용일자 : 2022.09.01.자
 - 임용기간 : 2022.09.01. ~ 2029.08.31.(7년)
 - (나)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임해영(1970.06.29.생)
 - 재임용직급 : 조교수(비정년트랙)
 - 재임용일자 : 2022.09.01.자
 - 임용기간 : 2022.09.01. ~ 2024.08.31.(2년)
 - (3) 2022학년도 제2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2022.06.21.)
 - 임용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교원 재임용 대상자 2명(교수 강웅섭, 조교수 임해영)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대해 적격함을 확인하고 전체 위원 찬성으로 의결함

간서명	송민	승민	이영희	이영희	조장환	조장환
-----	----	----	-----	-----	-----	-----

○ 대상자 업적평가 결과(평균 B등급 이상 적격)

- 교수 강응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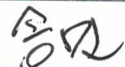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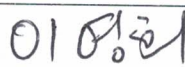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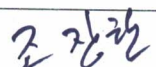
심사위원	교육(40)	연구(40)	봉사(20)	기타	계(100~)
A	38.7	39	19	-	96.7
B	제척	제척	제척	제척	제척
C	38.7	39	20	-	97.7
합 계					194.4 평균 A(97.2)

- 조교수 임해영

심사위원	교육(40)	연구(40)	봉사(20)	기타	계(100~)
A	39.7	38	18	-	95.7
B	39.7	36	17	-	92.7
C	38.7	36	16	-	90.7
합 계					279.1 평균 A(93.0)

~ 등을 회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하다.(관련 법령 등 포함)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송 민 이사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업적평가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바 2022년 9월 1일자 교원 재임용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하였고, 회의자료를 살펴봐도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학교에서 제청한 재임용 대상자 두 사람에게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조장환 이사 : 송 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노만균 이사 : 조장환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2022.09.01.자 교원 2명의 재임용(안)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3호 안건 “예명 대학원대학교 2022.09.01.자 교원 재임용(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송 민 	이영희 	조장환 
-----	---	---	---

(제4호 안건)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 이사장(의장) :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을 상정하며, 오늘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을 할 이사로 송 민 이사, 이영희 이사와 조장환 이사를 지정하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다.
- 송 민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이영희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조장환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이사장(의장) : 간서명할 이사 3인과 다른 참석이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송 민 이사, 이영희 이사, 조장환 이사가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6. 폐회 선언

- 이사장(의장) : 더 이상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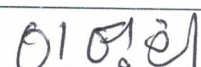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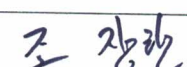
2022. 06. 28.

학교법인 레마학원	이사장	윤 원 영	<u>윤원영</u>
	이사	노 만 균	<u>노만균</u>
	이사	박 종 환	<u>박종환</u>
	이사	송 민	<u>송민</u>
	이사	이 영 희	<u>이영희</u>
	이사	조 장 환	<u>조장환</u>
	감 사	김 명 원	<u>김명원</u>
	감 사	조 영 임	<u>조영임</u>

[붙임]

□ 정관 변경(안) 신규 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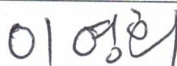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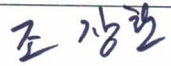
현행 (2022.04.28. 개정)	개정안	비고
<p>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u>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70조의6, 제70조의7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u> ② (생략)</p>	<p>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u>이 정관과 별도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u> ②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신설하고, 일반직원과 교원에게 적용하는 징계관련 사항을 구분함</p>
<p><신설></p>	<p>제71조의2(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제67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u>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u> ②일반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일반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일반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일반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신설) 개정(2022. 03. 25. 시행)에 따른 정관의 반영 * 조 신설</p>

간서명	송민 	이영희 	조장환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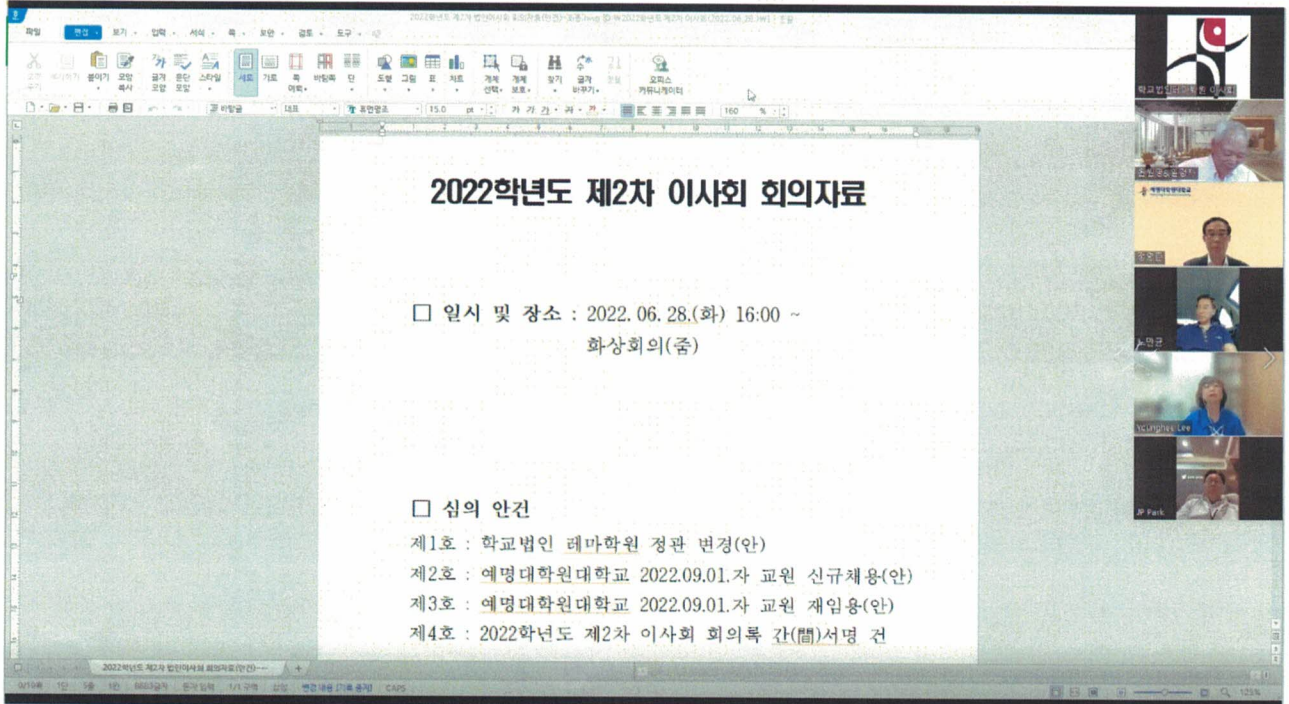
현 행 (2022.04.28. 개정)	개 정 안	비 고
<신 설>	<p><u>제71조의3(일반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u></p> <p>①일반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1조의2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일반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법다고 인정되어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③일반직원의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p>	<p>사립학교법 (제70조의6 신설) 개정(2022. 03. 25. 시행)에 따른 정관예의 반영 * 조 신설</p>
<신 설>	<p><u>제71조의4(일반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u></p> <p>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이 같은 법 제70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용권자에게 해당 일반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사립학교법 (제70조의7 신설) 개정(2022. 03. 25. 시행)에 따른 정관예의 반영 * 조 신설</p>

간서명	송민	송민	이영희 이영희	조장환 조 장환
-----	----	----	---------	----------

현 행 (2022.04.28. 개정)	개 정 안	비 고
<p>제78조의4(행동강령) 제78조의3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교직원의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p>	<p>제78조의4(행동강령) ①제78조의3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교직원의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u>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u> 1. <u>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 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u> 가. <u>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u> 나. <u>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u> 2. <u>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u> 3. <u>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u> 4. <u>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u> 5. <u>그 밖에 임직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 실시</u> ②<u>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신설)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2, 신설) 개정(2022. 03. 25. 시행)에 따른 정관예의 반영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제2항 및 제3항 추가 반영</p>
<p><신 설></p>	<p>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이사회 의결일</p>

간서명	송민 	이영희 	조장환 
-----	--	---	---

(화상회의 증빙자료)



간서명	송 민		이영희		조장환	
-----	-----	--	-----	--	-----	--